

2018년 제3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공고

2018년 제3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4명
-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격

구분	직급	인원 (1명)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자)	시험과목	비고
업무직	업무7급 (전기)	1명	전기산업기사 이상	일반상식, 국사	

- 제한경쟁시험 응시자격

구분	직급	인원 (3명)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자)	시험과목	비고
상용직	시설관리원 (일반)	2명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 보통 이상)	일반상식	
	시설관리원 (기계)	1명	취업지원대상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 상용직 컴퓨터관련 자격증은 공고문 가산특전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를 말한다.
- ※ 응시자격이 2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임용시기(예정)

- 임용예정시기 : 2018. 07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임용예정부서 : 공단 운영 사업장

응시자격

공통사항(기준 : 공고일 현재)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 **※ 시설관리원은 공고일 현재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시험방법

제1차 필기시험

- 필기시험 과목 : **업무직(일반상식 25문항, 국사 25문항, 시험시간 50분)**
상용직(일반상식 25문항, 시험시간 30분)
- 필기시험 점수 : 100점 만점(객관식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방법 : 과목당 40% 이상 득점자 중 부가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출제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함

제2차 면접시험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장소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본부
- 면접시험 : 5개 평가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 ※ 면접위원이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불합격만 결정
- ※ 평가항목 :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두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시)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 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 합격자의 결정방법

-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1차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단 시설관리원(일반)의 경우 우대사항 자격소지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동점자의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함.

□ 가산특전

○ 적용방법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
- 자격증이 둘 이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가산특전은 1차 필기시험에 한하여 적용

직원공개채용 시험가산점수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나’ 참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관련법에 의거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제한경쟁시험인 상용직 시설관리원 응시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

나. 자격증 소지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한다.

3. 시험일정

구 분	시행일정	기간	장 소	비고
1차 필기시험 장소	2018.06.30.(토) 10:30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내 시험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8.07.02.(월) 17:00	-	공단 홈페이지 게시	
2차 면접시험	2018.07.05.(목)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내 면접장	
최종 합격자 발표	2018.07.06.(금)	-	홈페이지 게시	

※ 시험 당일 10: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 2018. 06. 18.(월) ~ 06. 22(금) 09:00 ~ 18:00

나. 방법 :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대리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

다. 장소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체육로 90번지)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남문 81 <S-81>)

5.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 응시원서 접수시 확인 서류(**제출하지 않으나 원서접수 시 지참**)
 - 응시자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및 자격증 등)
 - 가산점 자격증 (원본 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실시 전)

- 응시자격 증빙서류(자격증 등)
- 가산점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가산점 및 응시자격(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로 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90일 사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가 없는 제출 서류는 90일후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파기 합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하여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함)

6. 보수 및 직무

- 월기본급(초임) : 업무직 7급 1호봉 (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 상용직 시설관리원 일반 (일급 55,790원)
 - 상용직 시설관리원 전기 (일급 77,780원)
- 수 당 :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주5일(40시간) 근무제이나 **직무 및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최종합격자가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지 아니 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 전일 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거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되어 합격은 자동취소 됩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 828- 6812)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업무직 상용직	(50분) (30분)	일반상식, 국사 일반상식	50문항 25문항

2. 응시자 주의사항

- 가. **시험당일 10: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30 이후 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및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에 참여할 수 없음)
 -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라.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휴대전화기**·이어폰·MP3플레이어, PMP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시험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므로 전부 반납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3. 시험중 주의사항(부정행위 등 금지)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정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